

[다자녀가구 특별공급] 서류제출안내



※ 제출하시는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0.31)**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아래 서류 및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구분	제출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동 서류	필수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필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필수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필수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필수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필수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 상세증명으로 전부 공개 발급
	필수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필수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※ 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모두 제출
	해당자 (추가)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해당자 (추가)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
	해당자 (추가)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※ [공통①]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
	해당자 (추가)	전세피해자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, 낙찰주택이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서, 주택공시가격 1억5천만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※ [공통②] 전세피해자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
	다자녀 가구	해당자 (추가)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
해당자 (추가)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산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해당자 (추가)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해당자 (추가)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해당자 (추가)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이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(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해당자 (추가)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부적격 당첨 통보자	해당자 (추가)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 화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해당자 (추가)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대리인 제출시	필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필수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필수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